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의2제1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